

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5일
신 청 인	① 성 명		② 생 년 월 일	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	
사 업 장	⑤ 소 재 지		⑥ 전 화 번 호	
주차장치	⑦ 종류 및 방식			
	⑧ 명 칭		⑨ 인 증 번 호	
재 발 급 신 청 사 유		☐ 못 쓰게 됨 ☐ 잃어버림		
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(지정인증기관) 귀하				
※ 첨부서류 1.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(못 쓰게 된 경우만 첨부합니다) 2. 분실사유서(잃어버린 경우만 첨부합니다)				수수료
				없 음

(뒤 쪽)

※ 작성 시 주의사항

-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-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.
- ⑦·⑧·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